

## 제 목 | 아파트 측벽 낙하물방지망 1단만 설치 여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입니다. 측벽부의 낙하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판 내부 및 발판의 1500데니어 안전망을 별도로 설치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측벽부의 낙하물 방호선반은 설치하였지만 낙하물 방지망 2단, 3단은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조(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 설치,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등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규정에 의한 낙하물방지망은 10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하며,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내지 30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낙하물방지망은 공사현장의 공법과 상관없이 당해 작업으로 인하여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 지에 따라 설치 및 해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때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동낙하물방지망은 상기규정에 따라 10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의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제 목 | 휴직 후 퇴직금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문의

회사직원 중 한 분이 한달가량 휴직을 신청 후 그 다음 달에 퇴사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 간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정 기간 중에 휴직기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 2조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2조에 의거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산전후휴가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업기간,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께서 질의하신 근로자가 사용한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퇴직 전 3개월의 기간 중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귀 질의의 경우 2개월)의 임금총액과 일수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제 목 | 대기방지시설 설치신고 여부

기존에 설치된 성형기는 대기배출시설이 아니므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생각해 성형기에서 발생되는 소량의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대기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하려면 배출 및 방지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 대기오염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처리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고자 방지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출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과 비 배출시설의 방지시설은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비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배출시설과 연결된 방지시설에 연계 처리할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 목 | 아파트 공사의 기초공사 시 안전점검실시 시기 및 보고서 제출 횟수 문의

건축물의 기초공사 시행시기가 각 동별(구조물별)로 다른 경우의 정기안전점검 실시시점 및 보고서 제출 횟수가 궁금합니다.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로 정기안전점검은 점검대상구조물의 안전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정기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은 공동주택을 하나의 시설물로 보지 않고 개별적인 시설물로 보아야 하므로, 단지내 개별 시설물의 기초 시공 시점이 다른 경우 개별 시설물(각 동)별로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따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별표1]에 적용되는 건설공사 규모 및 기간 ·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정기안전점검 시기 및 횟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보완)작성한 후, 발주자(인 · 허가 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아 점검 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제 목 | 정기안전점검실시 시기에 대한 문의

건축물의 1차 정기안전점검시기인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 안전점검의 목적이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에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콘크리트 타설전”의 의미는 기초부위 철근배근후 콘크리트 타설전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은 건설업자등이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47호, 08.12.28.) 별표1의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를 기준으로 당해 공사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에 따라 발주자(단,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 · 인가 · 승인등을 행한 행정기관의장을 말함)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하고, 발주자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46조2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 또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자)등은 발주자(발주청) 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 · 인가 · 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설공사 실착공하기 전에 안전관리계획(변경시 동일) 제출해야 하고, 발주자 또는 행정기관의 장은 동 계획에 대하여 검토 · 보완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제 목 | 공사비 증액 요인 발생 시 안전관리비 항목 공사비 계상 여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에 의거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감리단에 요청한 바 건기법 시행 규칙 제21조의4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비중 정기안전점검비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표준안전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안전관리비 계상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건기법상의 정기안전점검 실시로 인하여 공사비 증액요인이 발생했을 시 별도의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공사비에 계상할 수 있는지요?

⇒ 건설기술관리법상에서의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4 제1항에 의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정기안전점검비용,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등을 위한 비용이며,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의 표준안전관리비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근로안전에 소요되는 비용임을 알려드리며, 이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상 정기안전점검 대상공사일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서 정기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므로 인하여 공사비 증액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기안전점검비가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야하며 표준안전관리비와는 별도로 계상되어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고객센터